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 서울지역본부 -

2018. 12.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감사실





1. 감사 대상기관 : 서울지역본부

2. 감사 기간 및 인원

□ 기 간 : 2018. 12. 10.~12. 14. (5일간) ※ 예비감사: 2018.12.03.~12.07.(5일간)

□ 인 원 : 감사부장 등 11명

3. 감사범위 : 2016. 4. 30. 이후 수행업무 전반

4. 감사중점

분야	주요 감사 착안사항	선정 근거(사유)
공통사항	무사안일, 복지부동 사례	'18년 감사운영 중점사항
	기술지도 사업의 성과, 효율성 등의 적정성	
	출장업무 수행의 적정성	유사·반복 지적사례
	무사안일 기술지도 및 보고서 작성	
	외부강의 사전 신고 이행 여부 및 복무관리 실태	
산업안전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의 적정성	'16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재정지원	클린사업 품목별 보조금 한도 준수여부	상시모니터링 추출
	클린사업장 투자완료 및 신용평가 확인의 적정성	
직업건강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의 적정성	유사·반복 지적사례
건설안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적정성	유사·반복 지적사례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순찰의 적정성	
서비스안전	위탁사업 수행실태 및 모니터링의 적정성	유사·반복 지적사례
	위탁사업 실적 확인 및 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상시모니터링 추출
교육·안전문화	외부강의 시 복무처리의 적정성	유사·반복 지적사례
	산재예방요율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	
	사내교육지원 업무의 적정성	상시모니터링 추출
경영지원	병가·연차·출장 등 복무관리 실태	유사·반복 지적사례
	업무추진비 등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성	상시모니터링 추출
	계약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유사·반복 지적사례



1. 처분요구사항

○ 신분상조치 : 6건(6명)

- 경고 1건(1명) : 교육·안전문화분야 1건(1명)
- 주의 5건(5명)
 - 직업건강분야 1건(1명), 건설안전분야 1건(1명), 경영지원분야 3건(3명)

○ 행정상조치 : 5건

- (모범) 콜센터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문화 확산 1건
- (개선) 안전검사 연기기한 및 신청서 반려 기준 부재 등 2건
- (통보) 기록물(재해조사 의견서) 관리 미흡 등 2건

○ 현지조치 : 6건

-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기간 미준수 등 6건

○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시정(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시정	통보	모범	현지 조치
총건수 (인원)	신분 인원	재정 금액	소계 (금액)	추징 (금액)	회수 (금액)							
17 (6)	6	-	-	-	-	1 (1)	5 (5)	2	-	2	1	6

2. 처분요구 내역

연번	일련번호	처분요구내용	관련자		지 적 내 용
			소속(부서)	직급.성명	
1	1-19-1	통보 모범	서울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장	콜센터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문화 확산
2	1-19-2	개선	○○원	○○원장	안전검사 연기기한 및 신청서 반려 기준 부재
3	1-19-3	주의	서울지역본부 ○○부	○급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서 작성 부적정
4	1-19-4	통보	○○본부	○○본부장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사후심사 처리기한 설정 오류
5	1-19-5	개선	○○실	○○실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무 시 외부 심사원 활용관련 규정 미비
6	1-19-6	통보	○○실	○○실장	기록물(중대재해조사 의견서) 관리 미흡
7	1-19-7	주의	서울지역본부 ○○부	○급 ○○○	재해조사의견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미실시
8	1-19-8	경고	○○지사 ○○부	○급 ○○○	무재해인증 기록물관리 불철저 등 업무처리 부적정
9	1-19-9	주의	서울지역본부 ○○부	○급 ○○○	자산 불용결정 절차 부적정
10	1-19-10	주의	○○원	○급 ○○○	물품 구매, 제조 시 첨부서류 누락
			서울지역본부 ○○부	○급 ○○○	
11	1-19-11	주의	○○원	○급 ○○○	자산취득절차 부적정
12	1-19-12	현지 조치	서울지역본부 ○○부	○○부장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기간 미준수
13	1-19-13	현지 조치	서울지역본부 ○○부	○○부장	수입품 안전인증확인서 발급절차 미준수
14	1-19-14	현지 조치	서울지역본부 ○○부	○○부장	서면심사 적합 기술문서 종합정보 시스템 업로드 미실시
15	1-19-15	현지 조치	서울지역본부 ○○부	○○부장	위험성평가 사전컨설팅 실시 미흡
16	1-19-16	현지 조치	서울지역본부 ○○부	○○부장	서비스업 기초안전지원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미흡
17	1-19-17	현지 조치	서울지역본부 ○○부	○○부장	서비스업 사고성 재해예방 확인기술 지도 미실시



직위	성명	담 당 업 무	관련부서
부장 (감사반장)	전종표	○ 감사반 업무 총괄	-
차장	유재흥	○ 서비스안전 분야	서비스안전부
차장	이상근	○ 직업건강 분야	직업건강부
○○공단	조○○ (외부위촉)	○ 직업건강 분야(근로자건강센터) - 감사기간 : '18. 12. 10. ~ 12. 11.(2일)	
차장	송인회	○ 산업안전 분야	산업안전부
○○발전	조○○ (외부위촉)	○ 전문기술 분야 - 감사기간 : '18. 12. 10. ~ 12. 11.(2일)	
차장	원진성	○ 경영지원 분야	경영문화부
차장	양○○ (위촉)	○ 회계·계약 분야 - 감사기간 : '18. 12. 10. ~ 12. 12.(3일)	
차장	방수일	○ 건설안전 분야 ○ 감사계획·결과 보고서 작성	건설안전부 건설시스템단
차장	박성훈	○ 교육·안전문화 분야	교육센터
차장	김○○ (위촉)	○ 안전인증·검사 분야 - 감사기간 : '18. 12. 10. ~ 12. 12.(3일)	안전인증부

[붙임]

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모범)

일련번호 1-19-01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관련자(소속기관) 서울지역본부장(상동)
제목 콜센터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문화 확산
내용

감정노동의 대표직종인 콜센터 고객응대근로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콜센터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특히 전국 1,245개의 콜센터 중 서울권역에 651개(51%)가 집중되어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사업의 수준향상이 필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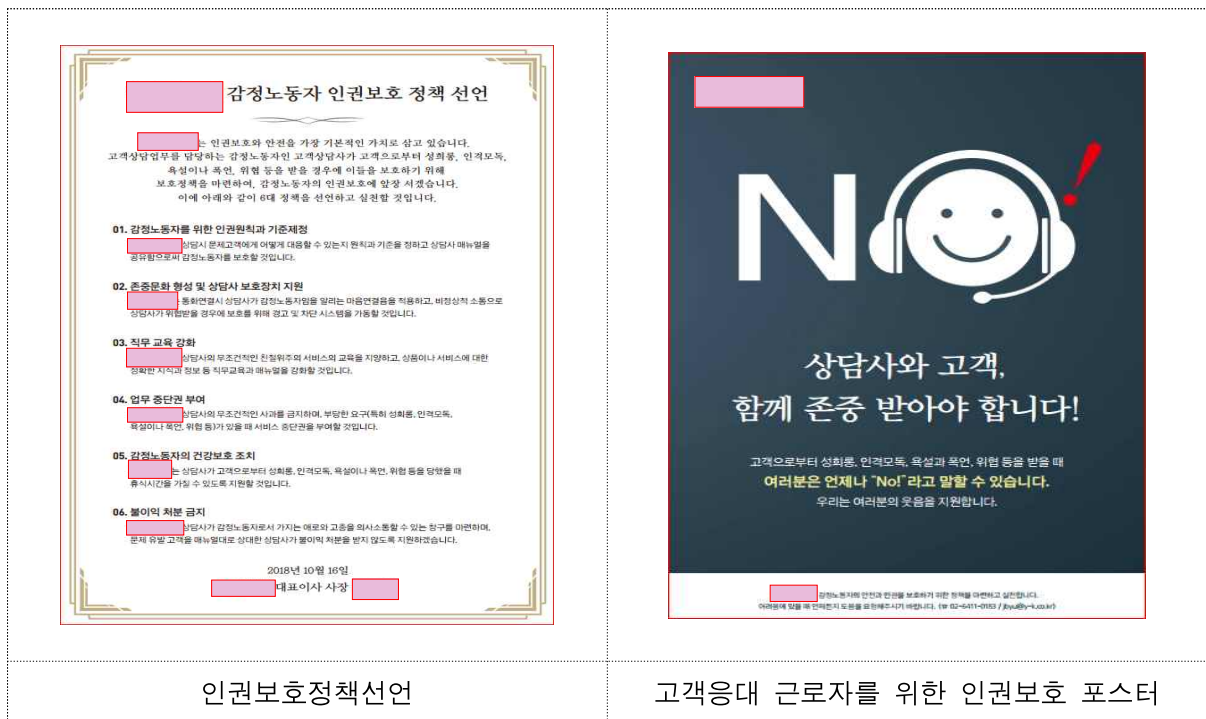
이에 따라,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콜센터 감정노동자 위험도를 평가하고 감정노동근로자 보호의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업 초기 본부(○○실)에서 제공한 콜센터 DB 350개소 중 80% 이상이 폐업 혹은 사업장 이전(대다수 콜센터가 1년 단위의 도급계약)으로 사업대상 확보 및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하여 콜센터 도급업체 10개소 및 금융권 21개사를 통하여 신규사업장 250개소를 발굴하였다.

또한, 콜센터 도급업체 5개사 책임관리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본사차원의 대응방안, 감정노동근로자 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콜센터 감정노동근로자 위험도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세분화된 별도 평가표를 제작·보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 △△△△△ 등과 함께 ‘감정노동근로자 인권보호 선언’을 통하여 감정노동근로자 인권보호 6대 정책을 제정하고 서비스 중단권리 등 감정노동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마련하였으며, 인권보호 선언식 내용을 콜센터 본사(10개소)에 전파하였다.

【그림】 감정노동근로자 인권보호 선언



인권보호정책선언

고객응대 근로자를 위한 인권보호 포스터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근로자 존중문화 형성’ 등 감정노동근로자 보호 의식수준 향상 및 전국에 산재해 있는 콜센터 감정노동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대기업(원청)과 콜센터 본사와의 구축을 통해 인권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콜센터 감정노동자 재해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감정노동근로자 인권보호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서울지역본부장)은

콜센터 감정노동근로자 위험도평가 내실화 및 감정노동근로자 인권보호 문화 확산에
기여한 관련업무 담당자에게 자체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통보/모범)

※ 해당 사례 홍보는 감사실에서 실시예정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행정상 조치 라.통보(모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개선요구

일련번호 1-19-02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원
관련자(소속기관) ○○원장(상동)
제목 안전검사 연기기한 및 신청서 반려 기준 부재
내용

「안전검사업무처리규칙」 제5조(처리기간의 연장)에 의하면 실시기관 장의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행규칙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처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안전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신청인의 사정으로 안전검사 실시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또한 같은 규칙 제4조(신청서의 보완 및 반려)에 의하면 실시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안전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검사대상품이 아닌 경우
2. 위탁고시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된 안전검사대상품이 아닌 경우
3.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지하지 아니하여 보완요청 하였으나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4. 신청인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반려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지만, 서울지역본부 종합감사일인 2018년 12월 현재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처리실태를 살펴보니 신청기간(2016. 4. 30. ~ 2018. 11. 30.)내

총 1,987개소 중 신청인 사정 등으로 인한 검사연기 횟수 및 실제 소요기간은 아래의 [표1]과 같으며 민원처리기간은 준수하고 있으나 결과 처리에 필요한 실제 소요기간은 지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검사연기 횟수 및 실제소요기간

검사연기횟수	건수	실제소요기간
1회	123 건	평균 68일
2회	20 건	평균 91일

※실제소요기간: 검사희망일 고려없이 수수료 입금일부터 검사완료일까지 기간(공휴일 제외)

더욱이, 안전검사 수수료는 “입금” 하였으나,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사전 연락 없이 검사일에 검사장을 방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총 8건에 대해 민원접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되었으나, 현재까지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본부 ○○부에서는 신청인에게 지속적인 연락 시도 및 안전검사 수검 독려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신청서를 반려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반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입장이다.[표2]

[표2] 안전검사 수수료 입금 후 안전검사 미실시 사업장 현황

번호	민원접수번호	사업장명	대상품명	민원접수일	검사연기 횟수	수검독려 공문발송횟수
1	00000	XXXX	이동식크레인	2018-08-09	0	2
2	00000	XXXX	이동식크레인	2018-05-03	0	2
3	00000	XXXX	이동식크레인	2018-05-03	0	2
4	00000	XXXX	이동식크레인	2018-05-03	1	2
5	00000	XXXX	이동식크레인	2018-05-02	0	2
6	00000	XXXX	이동식크레인	2018-04-06	0	2
7	00000	XXXX	이동식크레인	2018-04-06	2	2
8	00000	XXXX	이동식크레인	2017-10-31	2	2

전국적으로 보면 업무 특성상 이처럼 검사연기 등에 의한 실제 소요기간이 지체되고,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건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검사연기 등 신청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안전검사가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안전검사를 장기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지침에는 처리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기한의 정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하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특히, 안전검사를 적시에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원장)은 검사연기,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검사를 장기간 실시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한 검사연기 기한 및 반려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원장)은

안전검사 신청 사업장에서의 검사연기,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안전검사를 장기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검사연기 기한 및 신청서 반려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조치근거 : ①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 조치 나. 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주 의 요 구

일 련 번 호	1-19-03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관련자(소속기관)	○급 A(서울지역본부 ○○부)
제 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서 작성 부적정
내 용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9조(방지계획서 심사)에 따라 심사위원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이하 “심사고시”) 별표2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부 심사·확인기준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결과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본부 ○○부에서는 유해물질·분진작업 관련 설비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하면서 규칙이 개정된 2018년 8월 30일 이후에도 심사고시에서 정한 세부 심사·확인기준에 따른 항목별 세부 판정내용을 심사결과서에 기재하지 않고, 심사대상 환기장치에 대한 세부사양만을 기재하는 등 부적정하게 작성하였다.

이로 인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를 실시한 설비의 구체적인 안전성 확보 수준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심사자의 판단근거가 기록되지 않아 심사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였다.

【표】 세부 심사·확인기준(유해물질·분진작업 관련 설비)

심사대상	심사·확인기준
공통사항	작업장의 안전 확보 여부(각 평면도 및 입면도는 축척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작업 동선 및 안전통로 확보 나. 건물의 출입문, 비상구, 계단 등의 안전 확보 및 추락방지조치 다. 작업장 바닥 및 통로의 미끄럼 방지조치 등의 안전조치 라. 폭발위험장소가 있는 경우, 폭발위험장소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1) 폭발위험장소 구분의 적정성(0종, 1종, 2종 등) 2) 각 장소별 방폭 전기기계·기구의 선정계획 마. 유해·위험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 여부 바. 전기설비로 인한 재해 예방 및 접지 적정 여부
유해물질· 분진작업 관련설비	가. 유해물질·분진작업 관련 설비의 공정도의 적정 여부 나. 유해물질·분진작업 관련 설비의 제기능 발휘를 위한 설계의 적정 여부 1) 후드형식, 제어풍속, 덕트 내 이송속도, 배풍량 2) 제어 및 인터록 장치 3) 제진, 세정 및 흡착설비 등의 배관 및 계장 4) 그 밖의 유해물질·분진작업 관련 설비별 특성에 따른 사항 5) 비상정지 시 발생원 처리대책

자료: 심사고시 별표2 내용 발췌

관계기관 의견 의견없음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서울지역본부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한 관련자(○급 A)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조치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1.신분상조치 다.주의, 동 지침 별표3
기술사업(서비스업 포함) 분야 1.법정사업 ○사업지침, 업무지침 및 공단규칙 이상의 규정 미준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통 보

일 련 번 호 1-19-04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본부)
 관련자(소속기관) ○○본부장(상동)
 제 목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사후심사 처리기한 설정 오류
 내 용

『민원사무처리규칙』 제6조 및 별표1에 따라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후심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의 [인정심사 결과서 공유] 화면에서는 사후심사 처리기한을 대상 선정일로부터 1개월로 설정하여 표출하고 있다.

【그림】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결과서 공유 화면

번호	인정구분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명	심사원	처리기한	현장심사일	결재상태	인정단계
1	사후1		00000000000		고	2018-09-15	2018-08-17		인정
2	사후1		00000000000		이	2018-09-06	2018-11-05		인정
3	사후1		00000000000		윤	2018-11-14	2018-10-16		인정
4	사후1		00000000000		임	2018-09-06	2018-10-22		인정
5	사후1		00000000000		정	2018-08-09	2018-12-13		인정
6	사후1		00000000000		김	2018-08-18	2018-10-04		인정
7	사후1		00000000000		하	2018-08-12	2018-08-17		인정
8	사후1		00000000000		김	2018-09-06	2018-11-09		인정
9	사후1		00000000000		최 두	2018-09-19	2018-10-12		인정
10	사후1		00000000000		최	2018-08-30	2018-11-05		인정

1-10 (전체:4387건)

자료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화면 발췌

이로 인하여 일선기관의 사후심사 실시 결과가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실시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의견 없음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본부장)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의 [인정심사 결과서 공유] 화면에서 사후심사 처리기한을 삭제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조치 라. 통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개선요구

일련번호 1-19-05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실)

관련자(소속기관) ○○실장(상동)

제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무 시 외부 심사원 활용 관련 규정 미비

내용

공단은 건설현장 기술지원 중심의 재해예방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사 중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보급을 통해 자율안전보건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 제11조(사후심사)에 의하면, ‘④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심사를 필요에 따라 외부 안전보건전문기관 또는 공동인증기관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칙 제2조(정의)에 의하면 ‘심사원이란 제19조에 따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심사원 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하며, 공단직원 이외의 심사원을 외부 심사원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 추진현황을 확인한 결과 심사원대비 사업목표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부 심사원 활용’이 논의되고 있다.

【표】 연도별 심사원 및 목표물량

연도	'16년	'17년	'18년	비고
심사원수(명)	5	9	5	공단직원
사업 목표물량(개사)	89	110	110	

자료 : 사업계획추진지침의 목표물량 및 인력현황 재구성

하지만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지침에서는 사후심사 시 외부심사원 활용에 필요한 절차, 방법, 범위 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관계기관 의견 ○○실은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사후심사 시 외부심사원 활용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치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행정상 조치 나. 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통 보

일 련 번 호 1-19-06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실)

관련자(소속기관) ○○실장(상동)

제 목 기록물(중대재해조사 의견서) 관리 미흡

내 용

사무관리규칙 제61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에 의하면 공단의 문서관리부서의 장은 소장기록물의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록물의 공개여부 구분표시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 하여 기입하되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의 경우에는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표시하고 괄호 안에는 동 규칙 별표 18(기록물 공개여부 구분번호)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구분번호를 추가로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ERP-전자결재-문서함에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를 관리하는 경우 사무관리규칙 별표 18(기록물 공개여부 구분번호)에 따라 ‘수사·재판·범죄 예방 등의 관련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의 이유로 비공개로 구분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하지만 ERP-전자결재-문서함의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관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6건을 공개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기록물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로 구분 관리현황

연번	일선기관	문서번호	제목	수신(발신)자	시행일자	공개여부
1	XXXX	○○부-000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보고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과장)	2018-07-20	공개
2	XXXX	○○부-000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보고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과장)	2018-03-20	공개
3	XXXX	○○부-000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보고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과장)	2018-01-08	공개
4	XXXX	○○부-000	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과장)	2018-06-08	공개
5	XXXX	○○부-000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제출	○○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과장)	2018-07-27	공개
6	XXXX	○○부-000	중대재해 조사 결과보고	○○지방고용노동청 장(○○과장)	2018-03-26	공개

자료 : ERP-전자결재-문서함의 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실에서는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관리 시 ‘비공개’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실장)은

ERP-전자결재-문서함에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관리 시 ‘비공개’로 구분하여
문서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2. 행정상조치 라. 통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주의요구

일련번호 1-19-07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관련자(소속기관) ○급 A(서울지역본부 ○○부)

제목 재해조사의견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미 실시

내용

공단은 중대재해발생 현장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조사지원 요청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재해원인분석 및 대책제시, 동종·유사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전파 등을 통하여 중대재해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공단은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 제7조(재해조사 전문가 검토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재해조사의견서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이상 사망하거나 3명이상 사상(사망 반드시 포함)한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고
2.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3명이상 사망하거나 5명이상 사소한 중대재해
3. 사고원인이 불명확한 사고
4. 그 밖에 일선시관장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또한 전문가 검토는 재해조사 전문가 인력풀에 포함된 2인 이상에게 의뢰하며 재해의 중대성,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본부의 2017년~2018년도에 중대재해조사 의견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7년도에 2명이상 사망한 중대재해가 2건 있었으며 2건 모두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1】 전문가검토 미실시 현황

연번	사업장명	공사명	사망자	부상자	재해발생일	조사일자
1	XX물산(주)	XX지하철X호선3단계 919공구건설공사	2	0	2017-05-22	2017-05-22
2	XX개발(주)	XX XX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0	2017-06-02	2017-06-02

자료 : 중대재해 발생 현황 내용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서울지역본부에서는 “향후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서울지역본부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조치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1.신분상조치 다. 주의, 동 지침 (별표3) □기술사업(서비스업 포함) 분야 1. 법정사업 ○기타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경고요구

일련번호 1-19-08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관련자(소속기관) ○급 A(○○지사 ○○부)
제목 무재해인증 기록물 관리 불철저 등 업무처리 부적정
내용

「사무관리규칙」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및 제47조(기록물철의 작성·등록 및 편철·관리)와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신청)에 따라,

업무담당자는 기록물을 사무관리의 원칙(용이성, 신속성, 정확성, 경제성)을 준용하여 필요 시 (누구나)신속하게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무재해 인증 시 제출 받은 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무재해 목표달성 확인서, 무재해 목표달성 시간/일수 산정표 및관련 증빙서류) 등 해당 사업장 인증과 관련된 기록물 일체를 전면 표지를 사용하여 사안별로 발생순서에 따라 편철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역본부 2016년도 무재해업무 담당자는 2016년 4월 종합감사 중 무재해 인증 기록물을 적절히 편철하거나 보존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6년 5월 이후 진행 된 무재해 인증 관련 기록물철 전체 72개에 대해 일체의 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채 편철하였고, 일부 기록물은 관련 없는 2~3개의 사업장을 임의로 묶어 편철하였으며(3건),

무재해 인증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2건) 및 무재해 목표달성 일수 산정표(2건) 등을 누락하여 보존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지역본부에서는 “향후 사안별 편철 등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서울지역본부장)은 「사무관리규칙」 및 「무재해운동 규칙」 등 내규에서 정하는 업무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에게 엄중 “경고”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경고)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1. 신분상 조치 나. 경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주 의 요 구

일 련 번 호 1-19-09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관련자(소속기관) ○급 A(서울지역본부 ○○부)

제 목 자산 불용결정 절차 부적정

내 용

「2018년도 지출예산 집행지침(경영 2018-11호)」 비목별지침(유형자산)에 의하면 자산관리자는 해당 기관의 자산 불용 시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 이전에 교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관리규정시행규칙」 제26조(불용결정의 기준 및 절차)에서는 정부물품관리 법령에 따른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아니한 자산의 불용에 대해서는 본부 중앙자산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용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본부에서는 2017년도 6월 에어컨디셔너 등 9점의 자산을 불용 결정함에 있어 정부물품관리법령에 따른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역 본부 보통자산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임의로 불용 결정 하였다.

【표】 정부물품관리법령에 따른 내용연수 미경과 불용자산

(단위 : 천원)

순번	자산관리번호	품명	취득일자	취득금액	법정내용연수	사용기간
1	2010-06-000101	식탁	2010/01/29	200,000	8년	7년
2	2010-06-000104	거실장	2010/01/29	450,000	8년	7년
3	2010-06-000105	침대	2010/01/29	700,000	9년	7년
4	2010-06-000106	옷장	2010/01/29	700,000	8년	7년
5	2010-06-000107	책상	2010/01/29	390,000	8년	7년
6	2010-06-000108	쇼파	2010/01/29	650,000	8년	7년
7	2010-06-000109	냉장고	2010/01/29	380,000	8년	7년
8	2010-06-000111	텔레비전	2010/01/29	670,000	8년	7년
9	2010-06-000112	에어컨디셔너	2010/05/17	699,000	9년	7년

관계기관 의견 서울지역본부에서는 확인자 의견으로 “관련자 A(전문직 ○급)은 자산관리 업무 수행 경력(‘17년부터 해당 업무 수행)이 불용결정을 할 당시 6개월 미만인 직원으로 본부 숙소 반납결정 이후 임차보증금 반환기일(‘17년 6월 까지 반환지시)이 촉박하고 숙소비품 등을 내용연수 경과시까지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는 실정으로 해당 자산을 즉각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소 업무처리에 미비한 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업무수행시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지역본부에서는 확인자 의견을 통해 업무수행 당시 해당 업무 경력이 6개월 미만이었던 점,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련자는 입사일이 2014년 9월 1일로, 감사결과처분 양정 기준 상 감경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자산의 불용 절차를 미준수한 관련자 (○급 A)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1. 신분상 조치 다. 주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주의요구

일련번호 1-19-10

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관련자(소속기관) ○급 A(○○원 ○○실)
○급 B(서울지역본부 ○○부)

제목 **물품 구매, 제조시 첨부서류 누락**

내용

「계약사무규칙」 제8조(구매요구서의 접수 및 검토)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물품·공사 및 용역계약 요청서를 접수하면 품명, 규격, 수량, 지방서, 설계, 소요예산 및 납품장소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된 서류는 계약내용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 계약서류에 제작사양서 등이 누락되면 공단에서 요구한 사양과 다르거나 부실한 물품 등이 납품되어도 공단에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제작사양서 등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그러나,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종합감사 대상기간인 2016년 4월부터 2018년 11월 까지 서비스업 업무수행을 위한 음식업종 재해예방을 위한 물품 제작 등 9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서 작성 시 계약관련 서류 등에 제작사양서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

【표】 제작사양서 등이 누락된 계약 현황

(단위 : 원)

순번	계약일자	적요	집행액	계약담당자
1	2016.05.23.	음식업종 재해예방을 위한 물품제작	27,681,500	A
2	2016.06.03.	서비스업, 기초사업수행 콘텐츠 제작	1,848,000	A
3	2016.10.14.	미래전략추진단 네트워크 설치공사	1,436,600	A
4	2016.11.23.	고용부 합동캠페인 물품 제작	2,910,000	A
5	2017.02.15.	17년도 안전보건교육 안내 리플렛 제작	2,167,000	B
6	2017.02.27.	제조업 5대업종 사망재해 OPL제작	1,485,000	B
7	2017.06.09.	서비스업 재해예방 사업수행 콘텐츠 제작	16,500,000	B
8	2018.05.14.	위탁사업 사업수행에 따른 콘텐츠 제작	17,336,275	B
9	2018.11.07.	교육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물품구매	5,340,000	B

관계기관 의견 서울지역본부에서는 “물품 구매, 제조 등의 업무 추진시 계약 사무규칙 등의 내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서울지역본부장)은 물품 구매, 제조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요 첨부서류를 누락한 관련자(○급 B)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급 A은 「자산 취득절차 부적정」 건에서 신분상 처분을 요구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1. 신분상 조치 다. 주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주 의 요 구

일 련 번 호 1-19-11

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관련자(소속기관) ○급 A(○○원 ○○실)

제 목 자산 취득절차 부적정

내 용

공단 「계약사무규칙」 제54조(견적에 따른 가격결정 등)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자산 취득을 제외한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에 대해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산재예방사업수행을 위한 냉장고 구입’을 진행함에 있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지급요청을 통하여 구입하였다.

【표】 자산취득 내역

구입일자	적요	수량	취득금액
2016.06.09.	산재예방사업수행을 위한 냉장고 구입 (인증, 서비스)	2대	490,000원

관계기관 의견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 등의 구매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자산의 취득을 부
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급 A)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1. 신분상 조치 다. 주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현지조치(지도)요구서

일련 번호	1-19-12	받 음	소 속	직 · 성명
			서울지역본부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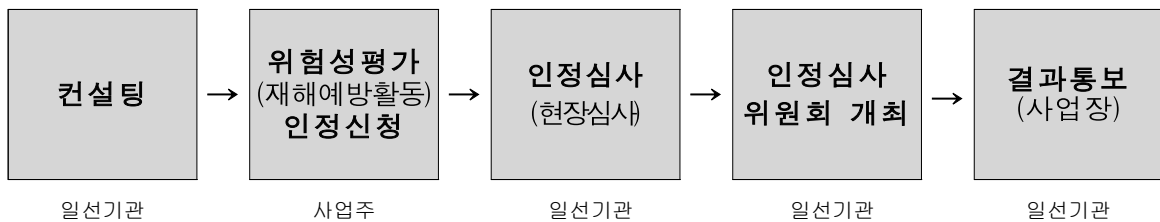
1. 제목 :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기간 미준수

2. 내용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2(위험성평가)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부고시 제2017-36호)에 따라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수준을 심사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위험성평가 인정 추진절차



2018년도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르면 위험성평가 인증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정심사 실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인정이 결정된 사업장에는 인정서를 5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서울지역본부 종합감사기간 중 2017년부터 2018년 감사일 현재까지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처리현황을 살펴보니, 2017년 4개소, 2018년 1개소는 인정심사 실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정심사위원회를 구성 하였음에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조치할 사항

서울지역본부장(○○부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업무처리시 처리절차를 준수하여 수행하도록 소속 직원에게 교육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감사결과처분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제4호 현지조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

현지조치(지도)요구서

일련 번호	1-19-13	받 음	소 속	직 · 성명
			서울지역본부	○○부장

1. 제목 : 수입품 안전인증확인서 발급 절차 미준수

2. 내용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제4장의2(안전인증 제품 수입요건 확인)에 의하면, 실시기관의 장은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코드 품목분류표상의 안전인증 대상제품(6개 기종 30개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입품 안전인증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서면심사 적합 제품과 동일하다고 인정 될 경우 7일 이내에 수입품 안전인증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표1]

[표1]적용범위

안전인증 대상제품	HSK 코드 품목수	비고
총 계	30개	별표 7 참조
프레스 / 전단기	8개	
고소작업대 / 크레인	6개	
사출성형기	5개	
방폭기기	11개	

또한, 「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제25조의2(수입품 안전인증 관리)에 따라 실시기관의 장은 서면심사를 받고 국내에 들여와 제품심사를 받는 수입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는 제품심사 신청서 접수 또는 다른 실시기관 접수 확인 후 수입품 안전인증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험도가 높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제조·수입 단계에서 근원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보급토록 하는 등 수입 미인증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서울지역본부 ○○부에서는 서면심사 적합에 따른 수입품 안전인증 확인서 발급 총 209건(2016. 4. 30. ~ 2018. 11. 30) 중 3건에 대해 발급일 이전 제품심사 접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품 안전인증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표2]

[표2] 수입품 안전인증 확인서 발급 이전 제품심사 접수 미확인 현황

사업장명	대상품	신청접수일	발급일	제품심사 접수일
xxxx	사출성형기	2018-09-17	2018-09-17	2018-09-27
xxxx	사출성형기	2017-07-21	2017-07-21	2017-08-03
xxxx	사출성형기	2017-04-05	2017-04-05	2017-04-06

3. 조치할 사항

서울지역본부장(○○부장)은 서면심사 적합에 따른 수입품 안전인증 확인서 발급 이전 제품심사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게 교육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감사결과처분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제4호 현지조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

현지조치(지도)요구서

일련 번호	1-19-14	받 음	소 속	직 · 성명
			서울지역본부	○○부장

1. 제목 : 서면심사 적합 기술문서 종합정보시스템 업로드 미실시

2. 내용

「위험기계 안전인증 등의 업무 처리지침」 5-2(적합시의 전산관리 등)에 의하면 심사원은 서면심사 실시 후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기술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신청인이 서면심사에 합격한 기술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심사원은 그 전자문서를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업로드하여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심사원이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제품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2월 서울지역본부 종합감사기간 중 2016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부에서 수행한 서면심사 처리현황을 살펴보니 신청인이 서면심사에 합격한 기술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한 총 368건 중 28건에 대하여 종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덧붙임 참조]

이에 따라,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심사원은 사업장에 불필요한 기술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품심사 전 기술문서에 대한 충분한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원만한 심사가 진행될 수 없는 환경이 초래되었다.

3. 조치할 사항

서울지역본부장(○○부장)은 서면심사 결과 적합 시 전자문서로 제출 받은 기술문서를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게 교육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감사결과처분양정기준 1. 처분요구의 종류별 기준 4. 현지조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

[덧붙임]

서면심사 적합 기술문서 종합정보시스템 업로드 미실시 현황

연번	접수번호	사업장명	민원접수일	심사완료일
1	00000	xxxx	2018-11-16	2018-12-03
2	00000	xxxx	2018-11-02	2018-11-06
3	00000	xxxx	2018-10-04	2018-11-22
4	00000	xxxx	2018-07-27	2018-09-21
5	00000	xxxx	2018-07-17	2018-08-28
6	00000	xxxx	2018-06-18	2018-07-17
7	00000	xxxx	2018-06-11	2018-06-28
8	00000	xxxx	2018-04-26	2018-05-10
9	00000	xxxx	2017-12-06	2017-12-08
10	00000	xxxx	2017-11-14	2017-11-29
11	00000	xxxx	2017-10-19	2017-10-30
12	00000	xxxx	2017-10-13	2017-10-23
13	00000	xxxx	2017-09-26	2017-10-19
14	00000	xxxx	2017-08-30	2017-09-25
15	00000	xxxx	2017-07-17	2017-08-07
16	00000	xxxx	2017-06-29	2017-07-10
17	00000	xxxx	2017-06-12	2017-07-13
18	00000	xxxx	2017-04-20	2017-05-14
19	00000	xxxx	2017-02-15	2017-02-16
20	00000	xxxx	2016-12-16	2016-12-26
21	00000	xxxx	2016-12-02	2017-02-08
22	00000	xxxx	2016-11-07	2016-11-11
23	00000	xxxx	2016-10-11	2016-11-23
24	00000	xxxx	2016-09-12	2016-09-21
25	00000	xxxx	2016-09-02	2016-10-14
26	00000	xxxx	2016-07-11	2016-08-16
27	00000	xxxx	2016-06-10	2016-06-22
28	00000	xxxx	2016-05-09	2016-05-27

현지조치(지도)요구서

일련 번호	1-19-15	받 음	소 속	직 · 성명
			서울지역본부	○○부장

1. 제목 : 위험성평가 사전컨설팅 실시 미흡

2. 내용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제21조(컨설팅)에 따라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또는 일선기관별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의 자체 위험성 평가 능력 배양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일부(30~50%)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서와 위험성평가 결과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자(○급 A)는 2018년도 31개소에 대한 위험성평가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2개소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결과표 작성을 누락하였다.

※ 사업장명: 주식회사XXX, XX초등학교

3. 조치할 사항

서울지역본부장(○○부장)은 위험성평가 결과표 작성이 누락된 2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추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감사결과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4. 현지조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현지조치(지도)요구서

일련 번호	1-19-16	받 음	소 속	직 · 성명
			서울지역본부	○○부장
<p>1. 제목 : 서비스업 기초안전지원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미흡</p> <hr/> <p>2. 내용</p> <p>공단(서울지역본부)은 10인 미만 기타사업 및 운수·창고·통신업 사업장의 재해 다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기초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위험설비, 장소별 안전수칙 전파 및 해당 직종별 안전보건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재해예방 효과 창출하기 위하여 「서비스분야 재해예방 기초안전지원(이하 “기초안전지원”이라 함)」 사업을 민간전문 기관에 위탁(이하 “위탁기관”이라 함)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이 수행한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공단 직원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p> <p>한편, 모니터링 결과는 정해진 보고서 양식에 따라 7개의 점검항목에 대한 ‘점수(항목별 10점~20점, 총점 100점)’와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수행기관에 통보, 개선요구 조치 및 이행결과 확인하도록 사업추진 지침에서 정하고 있다.</p> <p>서울지역본부는 2017년도 20개소, 2018년도 16개소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하였다. 그런데, 모니터링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모니터링 결과 문제점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 해당 점검항목이 평가점수를 감점하고도, 그렇게 평가한 이유나 개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모니터링 결과를 제대로 위탁기관에 피드백하지 못하였다.</p>				

3.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장(○○부장)은

기초안전지원 업무담당자를 교육하는 등 향후 기초안전지원 모니터링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문제점 등을 해당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요구 조치하는 등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4. 현지조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

현지조치(지도)요구서

일련 번호	1-19-17	받 음	소 속	직 · 성명
			서울지역본부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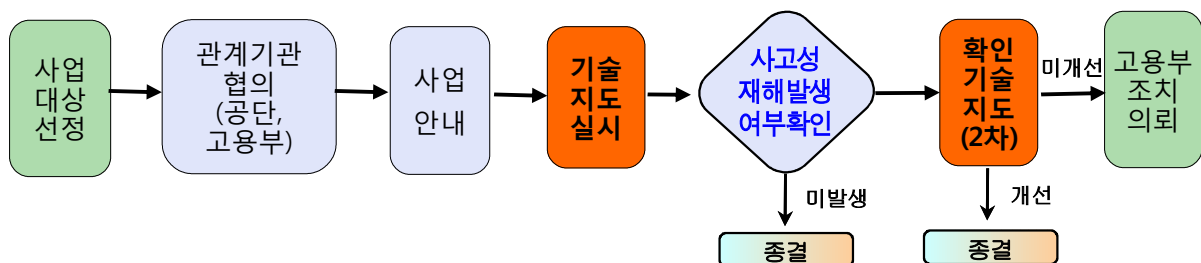
1. 제목 : 서비스업 사고성 재해예방 확인기술지도 미 실시

2. 내용

공단(서울지역본부)은 서비스업 및 운수창고통신업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위험설비 위주의 기술지도(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사업장)와 취약직종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술지도(취약직종 안전-up)를 구분한 맞춤형 재해예방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도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르면,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기술 지도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실시하고, 기술지도 후 사업수행자는 기술지도가 완료된 사업장의 사고성 재해 재발 여부를 7월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기술지도 후 사고성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을 다시 방문하여 기술지도 시 제시한 ‘재해 재발방지 대책’ 및 ‘주요 유해·위험요인’을 개선여부를 확인(이하 “확인기술 지도”라고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주요 유해·위험요인 등을 개선하지 않거나 확인기술지도를 거부하는 사업장은 관할지방고용관서에 행정조치 의뢰).

【그림】 사업추진 절차



2017년 서울지역본부 ○○부는 197개소에 대해 사고성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 중 3개소의 사업장에서 기술지도 후 사고성 재해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업무담당자(○급 A, ○급 B)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확인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기술지도 후 사고성 재해발생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주	산재 관리번호	수행자명	기술지도일	재해 발생일	요양승인일
XXXX	○○○	00000000000	A	2017-06-13	2017-10-17	2017-10-31
XXXX	○○○	00000000000	A	2017-06-07	2017-09-21	2017-10-13
XXXX	○○○	00000000000	B	2017-06-09	2017-09-06	2017-11-13

*자료: 2017년 서비스업 사고성 재해예방 기술지도 현황 및 산재통계자료(통계재해자리리스트)를 토대로 작성

3. 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장(○○부장)은

사고성 재해예방 기술지도(現 중상해 재해예방 기술지도)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 추가 사고성 재해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확인기술지도를 적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를 교육하는 등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처분요구의 유형) 4. 현지조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